

대여약관 (2014 년 2 월 17 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당사는 약관의 정의에 따라서 대여자동차(이하 [렌트카]라고 칭함)를 차수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차수인은 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적인 관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으로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 약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장 예 약

제 2 조 (예약신청)

차수인은 렌트카를 대여할 시, 본 약관 및 당사가 지정하는 요금표등에 동의함과 동시에, 당사가 지정하는 소정의 방법으로 미리 차종, 대여개시시간, 대여장소, 대여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차일드시트등의 부속품의 여부, 그밖의 대여조건(이하 [대여조건]이라 함)을 명시하여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차수인으로부터 예약신청이 발생했을 시,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는 렌트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대합니다. 이 경우, 차수인은 당사가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예약신청금을 지불합니다.

제 3 조 (예약변경)

차수인은 전조,제 1 항의 대여조건을 변경할 시,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합니다.

제 4 조(예약취소등)

차수인은 당사의 승낙 하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차수인이 차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대여개시시각을 1 시간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지 않았을 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차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었을 시, 차수인은 별도로 정한 당사소정의 예약취소수수료를 당사로 지불하는것으로 하며, 당사는 예약취소수수료가 발생했을 시,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차수인에게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었을 시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차수인에게 반환함과 당사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불반환, 리콜, 천재지변등 차수인 혹은당사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차수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5 조 (대체 렌트카)

당사는 차수인이 예약한 렌트카의 차종을 대여하지 못할 경우, 차수인에게 예약과 다른 렌트카의 차종(이하 [대체 렌트카]라고 함)의 대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2 차수인이 전항의 권유를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을 제외한 예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수인에게 대체 렌트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차수인은 대체 렌트카와 예약 당시의 렌트카 중, 대여요금이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3 차수인이 제 1 항의 대체 렌트카의 권유를 거절했을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대여가 불가능한 원인이 당사에게 있는 경우는 제 4 조의 제 4 항에 준거하여 취급하고, 당사의 책임이 아닐 경우는 제 4 조의 제 5 항에 준거하여 취급합니다.

제 6 조 (면책)

당사 및 차수인은 예약취소 또는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제 4 조 및 제 5 조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쌍방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예약업무의 대행)

차수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행하는 예약센터, 여행대리점, 제휴회사등(이하 [대행업자]라고 함)으로부터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행업자로부터 전항의 신청을 했을 경우, 차수인은 해당 대행업자에게 예약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 8 조 (대여계약의 체결)

차수인은 제 2 조의 제 1 항에서 정하는 차수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요금표등으로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대여 가능한 렌트카가 없을 경우, 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수인은 당사에게 제11조의 제1항에서 정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렌트카에 관한 기본 통달에 근거하여 대여장부(대여원표) 및 제 14 조의 제 1 항이 규정하는 대여증표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여계약의 체결 시, 차수인으로 하여금 차수인 또는 차수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함)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차수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경우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수인과 운전자가 상이할 경우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통달[렌트카에 관한 기본통달](자여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의 2.(10)(11)을 뜻합니다.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 92 조의 규정된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9 조별기양식 제 14 의 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뜻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107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 시, 차수인 및 운전자에게 대하여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 시,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번호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 시, 차수인에게 신용카드 혹은 현금지불을 요구하거나 그밖의 지불방법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9 조 (대여계약의 체결거절)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1) 렌트카 운전엔 필요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없을 경우
- (2) 음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으로 인한 중독증상을 보이는 경우
- (4) 차일드 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6 세 미만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 (5) 폭력단, 폭력단관계단체의 구성인 또는 관계자, 혹은 그밖의 반사회적조직에 속한 자인 경우

2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계약의 체결 시의 운전자가 상이한 경우
- (2) 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 지불이 체납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과거 대여 시, 제 17 조의 각호에 명시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4) 과거 대여 시, (다른 렌트카 사업자로부터의 대여를 포함) 제 18 조의 제 5 항의 비용이 미납이었거나 제 23 조의 제 1 항에 명시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5) 과거 대여 시, 대여약관 또는 보험약관위반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 (6) 그밖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전 2 항의 경우, 당사와 차수인 간에 이미 예약이 성립된 경우, 차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로 취급하며 차수인은 제 4 조의 제 3 항에 준거하여 예약취소수수료를 지불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차수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10 조 (대여계약의 성립등)

대여계약은 차주인이 대여계약서에 서명하여 당사에게 대여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차주인에게 렌트카(부속품을 포함. 이하 동일)를 인도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은 대여요금의 일부로 충당합니다.

2 전항의 차량 인도는 제 2 조의 제 1 항, 대여개시일시 및 대여장소에서 행합니다.

제 11 조 (대여요금)

대여요금이란 이하의 합계금액을 뜻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기본요금 (2)면책보상료 (3)특별장비료 (4)편도요금 (5)연료대금 (6)배차인수료 (7)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트카 대여 시, 지방운수국운수지국장(효고현에서는 고베운수감리부효고육운부장,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종합사무국육운사무소장 이하 동일)에 신고하여 실시하는 요금입니다.

3 제 2 조에 의한 예약을 완료한 후, 당사가 대여요금을 개정했을 시에는 예약시와 대여시 중, 요금이 싼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

제 12 조 (대여조건의 변경)

차주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 8 조 제 1 항의 대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시,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업무에 지장이 생길 경우, 당사는 변경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점검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 47 조의 2(일상점검정비)및 제 48 조(정기점검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하며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트카를 대여합니다.

2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정비 실시의 여부,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근거하여 차량외관 및 부속품을 검사하고 렌트카의 정비불량 여부, 대여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3 당사는 전항의 확인증, 정비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등을 실행합니다.

제 14 조 (대여증의 교부, 휴대등)

당사는 렌트카를 인도 시, 지방운수국운수지국장이 정한 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이용중에 전항에서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합니다.

3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시, 즉시 그 내용을 당사로 통지합니다.

4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반납할 시, 대여증을 당사로 반납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 15 조 (차주인의 관리책임)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인도받고 당사로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중]이라 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일상점검정비)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항시, 사용중인 렌트카를 사용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 47 조의 2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상점검정비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행해야 합니다.

제 17 조 (금지행위)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사용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등을 받지 않고 렌트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것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2) 렌트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의 사용, 또는 제 8 조 제 3 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인물이 운전하는 것
- (3) 렌트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담보용으로 활동하는 등, 당사의 권익을 침해할 포함하는 행위
- (4) 렌트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 렌트카를 개조 및 개장하는 등,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 (5) 당사의 승낙없이 렌트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등에 사용 혹은 견인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
- (6) 렌트카를 사용하여 법령 또는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7) 당사의 승낙없이 렌트카를 손해보험에 가입시키는 행위
- (8) 렌트카를 일본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 (9) 기타 제 8 조 제 1 항의 대여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 18 조 (위법주차의 경우 조치등)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위법주차 했을 경우, 즉시 위법주차를 한 관할지역의 경찰서에 출두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위법주차에 관련된 벌금등 및 위법주차로 인한 견인이동, 보관, 인수등의 제반비용을 납부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트카의 방치주차위반을 받았을 때,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트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 렌트카의 대여기간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각에 관할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하며,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또한 당사는 경찰이 렌트카를 이동시켰을 경우 당사의 판단 하에, 당사가 직접 경찰로부터 인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내렸을 시,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위반처리 상황을 교통범칙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등으로 확인합니다. 위반처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내립니다. 또한, 당사는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위반을 사실 및 경찰서등으로 출두하고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자인한다는 당사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함)에 서명을 요구하고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릅니다.

4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당사는 경찰서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위반에 관련된 책임추구에 필요한 협력을 하는것 외에, 공안위원회에게 도로교통법제 51 조의 4 제 6 항이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대여증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제 51 조의 4 제 1 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해당 차주인 또는 운전자 색출에 사용된 비용 또는 차량이동, 보관, 인도등에 사용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이하[주차위반관계비용]라고 함)을 청구합니다. 이같은 경우,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위반관계비용을 지불합니다. (1)방치위반금액상당액 (2)당사가 별도로정한 주차위반위약금 (3)해당 차주인 또는 운전자의 색출 및 차량이동, 보관, 인도등에 사용된 비용

6 제 1 항의 규정과 같이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위법주차에 관련된 범칙금을 납부해야할 경우에, 해당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제 2 항에 근거한 위반을 처리해야한다는 당사 지시 또는 제 3 항에 근거한 자인서에 서명해야한다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제 5 항에서 정하는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위약금으로 총당하여 해당 차주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액의 주차위반금(다음항부터 [주차위반금]이라 함)을 받습니다.

7 전항에 근거하여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주차위반금을 당사에게 지급한 뒤,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해당주차위반에 관련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방치위반금납부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위반금의 환급을 해야하는 경우는 당사가 이미 지불한 주차위반관계비용 중, 방치위반금액상당액만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5장 반환

제 19 조 (반환책임)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대여기간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환장소로 반환합니다.

2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3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기간중에 렌트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는 신속히 당사로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제 20 조 (반환 시의 확인등)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와 대면 하에 렌트카 및 비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거나 마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당초 차량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합니다.

2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반환 시, 렌트카 내에 차주인 또는 운전자 또는 동반자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환을 해야하며 당사는 렌트카 반환 후, 잊은 물건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대여기간 변경 시의 대여요금)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제 12 조에 의하여 대여기간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 후의 대여기간에 상응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합니다.

2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제 12 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승낙없이 대여기간을 연장한 후에 반환했을 경우, 전항의 요금 및 초과한 시간에 상응하는 초과요금의 2 배를 위약금으로서 지불합니다.

제 22 조 (반환장소등)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제 12 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했을 경우, 반환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제 12 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승낙없이 소정의 반환장소 외의 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했을 경우, 반환장소변경위약료를 회송비용의 2 배를 지불합니다.

제 23 조 (미반환 시의 조치)

당사는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시, 또는 차주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이유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시,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2 전항의 경우, 당사는 렌트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주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등의 관계자에게 조사, 차량위치정보 시스템을 작동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 1 항에 해당되는 경우,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제 28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사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렌트카 회수 및 차주인 또는 운전자를 찾아내기 위한 일절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등

제 24 조 (고장발견 시의 조치)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인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 또는 당사지정 연락처로 보고하고 이에 따른 지시를 따릅니다.

제 25 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사용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하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즉시 사고상황등을 당사 또는 당사지정 연락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2)전항의 지시에 근거하여 렌트카 수리를 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수리할 것

(3)사고에 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4)사고에 대하여 상대방과 해결 및 합의를 할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스스로 책임에 대한 사고처리 및 해결을 할 것.

3 당사는 차주인 또는 운전자를 위한 사고처리에 대한 조언을 함과 동시에 합의를 위한 협력을 합니다.

제 26 조 (도난발생 시의 조치)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인 렌트카를 도난당했을 시 또는 그밖에 피해등이 발생하였을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통보할 것

(2)즉시 피해상황등을 당사에 보고하며 당사 또는 당사지정 연락처에 보고하며 그 지시에 따를 것

(3)도난 및 그밖의 피해에 대해서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제출할 것

제 27 조 (사용불가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사용중에 고장, 사고, 도난 그밖의 사유(이하[고장등]이라 함)로 인해 렌트카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대여계약은 종료됩니다.

2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트카 회수 및 수리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등이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서 정하는 이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고장등이 대여 전에 이미 존재한 하자가 원인일 경우, 차주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트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트카의 제공조건에 대해서는 제 5 조의 제 2 항이 적용됩니다.

4 차주인이 전항의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시에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트카 제공이 곤란한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5 고장등이 차주인, 운전자 및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으로부터 대여에서 대여계약 만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차주인에게 반환합니다.

6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본조항에서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트카 사용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당사에게 본조항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 그 어떤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배상 및 보상

제 28 조 (배상 및 영업보상)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한 렌트카를 사용중에 제 3 자 또는 당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당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도난,차주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고장, 렌트카 손상, 약취등으로 당사가 해당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서 정한 NOC(Non operation charge)를 적용하여,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체없이 지불합니다.

제 29 조(보험 및 보상)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제 28 조의 제 1 항의 배상책임을 질 경우, 당사가 렌트카에 가입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로 다음과 같은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1)대인보상 1 명당 무제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포함)

(2)대물보상 1 사고당 무제한 (면책금액 5 만엔)

(3)차량보상 1 사고당 한도 시가액(면책금액 5 만엔 다만 버스,대형화물차는 10 만엔)

(4)신체상해보상 1 사고당 한도 3,000 만엔

2 경찰 및 당사로 접수되지 않은 사고 및 그 밖에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전항에서 정하는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 1 항에서 정해진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4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손해배상금을 당사가 지불했을 경우,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지체없이 당사로 변제해야 합니다.

5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면책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인이 미리 당사에게 면책보상료를 지불한 경우는 자손사고의 경우는 차량면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사전에 면책보상료의 지불이 없는 경우는 차주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이 됩니다.

6 제 1 항에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의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8 장 대여계약의 해지

제 30 조 (대여계약의 해지)

당사는 차주인 또는 운전자가 렌트카를 사용중 본 약관을 위반했을 시, 또는 제 9 조의 제 1 항, 2 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시, 별도의 통지 및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렌트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차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중도해약)

차주인은 사용중일지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금액에서 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차주인에게 반환합니다.

2 차주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시, 다음의 중도해약수수료를 당사에게 지급합니다.

중도해약수수료 = {(대여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기본요금) -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기본요금)}×50%

제 9 장 개인정보

제 32 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당사가 차주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운송법 제 80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렌트카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계약체결 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함

(2)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신청자 또는 운전자에게 대한 본인확인 및 심사를 위함

(3)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각종 이벤트, 캠페인등의 개최를 선전광고물의 송부, 전화, 이메일송신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함

(4)당사의 취급상품, 서비스 개발 또는 고객만족도의 향상등을 위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5)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지을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제 1 항 각호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차주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사전에 그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행합니다.

제 33 조 (개인정보 등록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제 32 조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이용차종, 용도, 대여개시일 등의 렌트카의 대여에 관련된 정보 및 차주인 또는 운전자의 이름, 주소등의 개인정보를 이하의 제공처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공처 및 이용목적) 본 렌트카 비즈니스의 프랜차이즈 본부, (주)렌타스 및 (주)렌타스와 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약, 운행관리, 사고대응이나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상품 서비스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관련 안내를 행할 것 (주)렌타스 및 (주)렌타스와 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한 예약센터 접수회사 및 Web 회원운영회사

예약, 운행관리, 사고대응이나 차주인 또는 운전자에게 상품기획, 개발 또는 고객만족도향상을 위해 참고 목적으로 당사 고객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

3 차주인 또는 운전자는 자기자신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만일 부정확하거나 상이한 점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정정 또는 삭제에 응합니다.

제 10 장 잡칙

제 34 조 (상 쇄)

당사는 본 약정에 근거하여 차주인 또는 운전자로 하여금 금전채무가 발생한 경우 차주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의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소비세)

차주인은 본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당사에게 지불합니다.

제 36 조 (연체배상금)

차주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본 약관에 근거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을 시, 상대방에게 연 14.6%이자로 연체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제 37 조(세칙)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 해당 세칙은 본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할 시, 당사 영업점포에 게재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합니다. 이를 변경할 시에도 동일합니다.

제 38 조(합의관할재판소)

본 약정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났을 시, 소송금액의 여부를 떠나,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관할재판소가 됩니다.

부칙

(실시시기)본 약관은 2008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실시시기)본 개정규정은 2011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실시시기)본 개정규정은 2014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됩니다.